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944

발의연월일: 2021. 6. 21.

발 의 자:정일영·김교흥·김주영

노웅래 • 민형배 • 소병철

양경숙 • 우원식 • 윤준병

윤후덕 • 아수진비 • 이용우

이해식 • 허종식 • 홍성국

홍정민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 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될 만큼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고령화 현상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그런데, 노인가구의 경우 소득의 감소, 자녀 지원, 고용환경의 열악함 등으로 자산 건정성이 악화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특히,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에 따르면 2019년 60세 이상인 가구의 소득 중앙값은 2,713만 원으로 30대 이상 성인층 중 가장 낮은 소득을 보이는데, 이는 은퇴 후가구주와 배우자의 월평균 적정생활비로 조사된 294만 원 (연 3,528만원)보다 훨씬 낮은 액수일 뿐 아니라 동 조사에 따르더라도 거주자와배우자의 생활비 충당 정도가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한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는 전체 대비 59.4%에 달하는 상황임.

그런데,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의 자산 구성을 살피면 60세 이상 가구의 경우 거주 주택이 가구 전체의 자산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45.1 0%에 해당해(평균자산 4억 2,701만 원 중 거주 주택 1억 9,261만 원) 60세 이상 가구의 경우 그 어떤 연령대의 가구보다 거주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인 65세 이상의 노인가구 중 일정 수준 이하의 수입(근로소득, 임대소득, 공적 연금 등 일체)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택의 매매, 보유자 사망 시 상속 등 권리변동이 발생할 때까지 재산세의 실 부담을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는 과세이연제도의 도입을 통해 노인가구의 현금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되, 세입 담보 및 제도 악용의 방지를 위하여 재산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여 매매 및 상속 등 권리변동 시 유예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없는 자는 해당 부동산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도록하고, 유예된 기간 동안 납부지연가산세보다 낮은 이자를 납부하도록함(제117조의2 신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7조의2(납부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 1. 65세 이상일 것
- 2. 「소득세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 ② 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 납부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허가한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가 끝날 때까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된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상

속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 1. 「소득세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2. 양도 등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한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3. 사망하는 경우
- ⑤ 제4항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납부를 유예받은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7조의2(납부유예) ①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일 것 2. 「소득세법」 제4조제1항 각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학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를 법세담보로 제공하고, 납부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허가한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가 끝날 때까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

니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 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된 재산 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납 부하여야 한다.
- 1. 「소득세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 2. 양도 등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한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 <u>3. 사망하는 경우</u>
- ⑤ 제4항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납부를 유예받은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